

# 2003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781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1. 28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1. 30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2. 26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제안이유

- 고성군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점검과 정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예방위주의 방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함.
- 2003년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정비사업비 36,000천원으로 재해 위험 또는 긴급 재해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코져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
  - . '97 ~ 2002 총 기금조성액        : 181,293,115원
  - '97 ~ 2002 법정기금조성액 : 537,907,000원
  - '97 ~ 2002 기금 이자수입        : 53,376,805원
  - 2002까지 기금사용액            : 409,990,690원
  - . 2003년 법정기금 예산액        : 72,896,000원
- 2003 기금사용계획 : 재해사전대비 하천정비 36,000,000원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재해대책 기금 조성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/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7년도부터 기금으로 조성해 왔으며,
-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을 요하는 보수·정비 사업에 동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, 동 조례 제10조에서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정비 사업비 36,000천원을 재해대책 기금에서 사용 하겠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2002년도 재해대책 기금으로 시행한 사업에 대한 내용과 향후 기금운용 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

- 2002. 12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